

은퇴자를 위한 소득 보조금 (Income Supplements for retirees)

연금국은 적절한 은퇴한 플랜 회원 및 그들의 생존 배우자에게 소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. 보조금은 모든 출처의 총 수입 및 소셜 시큐리티 가입에 따라 정해집니다.

소득 보조금

적은 사례비로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사역한 은퇴자나 생존 배우자의 은퇴 수입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돕고자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소득 보조금은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평생동안 지급됩니다.

보조금 액수

보조금 액수는 모든 출처의 총 수입 및 소셜 시큐리티 가입에 따라 다릅니다.

연금국은 신청자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, 대체 수입원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신청 자격

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- 미국 장로교 또는 해외한인장로회(KPCA) 소속의 만 65 세 이상의 은퇴자 혹은 생존 배우자여야 합니다.
- 연금국으로부터 미국 장로교 복리후생 제도에서 은퇴 또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
- 15년 이상 [확정급여연금제도](#)에 가입했어야 합니다. 가입한 경우,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국장로교 교회, 노회/대회 및/또는 교단 기관에서 사역했으며 총 사역 기간 15년 동안 5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10년의 사역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*.
- 총 연간 소득이 아래 목표 소득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.

*생존 배우자의 경우 이 자격 요건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가입 연수와 사역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목표 소득		
은퇴 전 연금 가입 연수	1인	부부
15 ~ 25 년 미만	\$35,640	\$42,120
25 ~ 30 년 미만	\$38,880	\$45,360
30 년 이상	\$42,120	\$48,600

신청 방법

- 작성한 [소득/주택 보조금 신청서 \(Income/Housing Supplement Application\)](#) 를 연금국 (이메일: memberservices@pensions.org) 으로 제출하십시오.
-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로 30 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.

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
연금국 800-773-7752 (800-PRESPLAN) (TTY: 711)으로 문의해 주십시오.

